

기획조사 06-081

중국 회사 등기 관리 조례 (中華人民共和國會社登記管理條例) 개정 요지 및 해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 06-081

중국 회사 등기조례(中華人民共和國會社登記
管理條例) 개정 요지 및 해설

2006. 12.

KOTRA

동북아팀

목 차

1. 신조례 공포 배경	1
2. 주요 개정 요지	2
3. '구조례' 와 '신조례' 비교	6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조례』(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제156호)가 2005년 12월 18일 공포된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조례』 개정
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하, 개정전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조례』를 ‘구조례’라 하고 개
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조례』를 ‘신조례’라고 칭함

1. ‘신조례’ 공포 배경

- ☐ 이번 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 2005년 10월 27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구회사법’이라 하고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신회사법』이라 함. ‘신회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 ‘신회사법’의 개정 요지는 다음 3가지로 분류됨
 - 회사의 설립규제가 완화됨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가 강화됨
 - 지배주주의 책임이 규정됨
- ☐ 이번 개정 주안점은 "국유기업 개혁 및 현대기업제도의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 입법취지에서 “모든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취지로 전환됐다는 점에 있음

2. 주요 개정 요지

□ '신회사법'과의 관계

○ 회사설립시 준칙주의(準則主義) 채택

- '신회사법'에서는 '구회사법' 제77조 허가주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회사 설립에 준칙주의가 채택됨. 이에 따라 설립등기시 회사등기기관의 '심사를 통해'라는 문구가 삭제됨(신조례 제3조, 제22조, 제47조). 즉. 준칙주의란 '회사법'의 규정에 적합하는 경우, 회사로서 등록을 인가한다는 의미임

○ 불입자본에 관한 기재 추가

- '구회사법'에서는 자본금은 설립시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구회사법' 제27조, 제82조) 등록자본은 실제로 불입된 출자총액과 일치함
- 그러나, '신회사법'에서는 자본금의 불입시기가 완화되어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액의 20%를 하회해서는 안되고, 잔액은 설립 후 2년 이내(투자회사는 5년 이내) 불입해도 된다고 규정('신회사법' 제26조, 제81조, 신조례 제20조 제3항). 개정 '회사등록자본등기관리규정' 제11조). 따라서 등록자본과 실제 불입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상기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 내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국인독자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등록자본과 불입자본이라는 두 개념이 있었기 때문임

○ 자본금 출자

- 무형자산(공업소유권, 노하우 등)에 의한 출자의 자본금액에 대한 비율이 '구회사법'에서는 20%로 규정되어 있으나(구회사법 제24조, 제80조), '신회사법'에서는 70%까지 확대됨('신회사법' 제27조, 제83조)
- 또한 이전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전액 현물로 출자가 가능했지만('구회사법' 제24조, 제80조), 회사법 개정으로 현금출자액을 등록자본금의 30% 이상 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신회사법' 제27조, 제83조)
- 회사법의 이와 같은 개정으로 '신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4조가 신설됨
- . “주주의 출자방식은 ‘회사법’ 제27조 규정에 합치해야 함. 주주가 현금, 현물, 지적소유권, 토지사용권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할 경우, 그 등기규칙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국무원의 관계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함”
- . 단, 제27조 2항에서 “주주는 노무, 신용, 자연인 성명, 영업상 신용, 프랜차이즈 권한 또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을 가격평가로서 출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

○ 경영범위 일탈행위에 대해

- 종래, 중국에서 경영범위를 일탈하는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었지만(민법통칙 제4조, '구회사법' 제11조 3항), '신회사법'에서는 '구회사법'의 제11조 제3항이 삭제됐음. 신조례에서는 회사의 경영범위가 정관의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한편(제15조), 경영일탈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 규정(구조례 제71조)은 삭제됨

- 경영일탈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신회사법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경영일탈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직접 처벌하지 않으나 일탈의 정도, 내용 등 상황에 따라 행정상 통제 및 지도를 할 것으로 보임
- 또, 중국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상기와 같은 개정을 했지만 경영범위 일탈행위에 대한 처리가 변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신조례’ 중에도 회사의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이 그대로 유보되어(제17조, 제22조, 제33조 등)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함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개정 및 문제점

○ 등기신청수속

- 신청인은 회사등기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 외에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제51조)

○ 연도검사기간

- ‘구조례’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신조례’에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정됨(제59조)

○ 자산평가기관의 책임

- 자산평가기관이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나 과실에 의한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를 제공한 경우에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관계

- ‘구조례’ 제75조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회사 등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그 등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신조례’ 제87조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회사 등기에는 본조례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에 그 등기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행정법규”의 문구를 삭제함
- 그러나 ‘신조례’가 회사에 관한 등기관리의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해 온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및 시행세칙』 등의 행정법규가 본 개정으로 삭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조례’ 제87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은 협의의 법률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행정법규를 포함한 광의의 법률로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향

- ‘신회사법’은 중국내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신조례’ 와 개정 ‘회사등록자본등기관리규정’은 실무적인 수속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동 조례는 중국 내외자기업 공통 적용됨.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 설립 변경, 종료시 개정된 ‘신조례’와 외국인투자기업법(합자기업법,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 등을 참조하여 서류 준비 및 등기시 필요 사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구조례'와 '신조례' 비교¹⁾

'구조례'	'신조례'	요지
제 1장 총 칙		
제1조 회사의 기업법인격을 확인하고 회사의 등기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로 칭함)에 기초해 본조례를 제정함	제1조 기업의 기업법인격을 확인하고 회사의 등기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로 칭함)에 기초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이하 '회사'로 칭함) 설립, 변경, 종료에 대해서는 본조례에 따라 회사 등기를 해야 한다.	제2조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이하 '회사'로 칭함)의 설립, 변경, 종료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회사 등기를 해야 한다. <u>회사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신청문서, 자료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u>	
제3조 회사는 회사 등기기관의 법에 따른 심사·등기를 거쳐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면 비로서 기업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례의 시행일 이후 설립되는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의 <u>심사·등기</u> 를 거치지 않으면 회사의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조 회사는 회사 등기기관의 법에 따른 등기를 거쳐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면 비로서 기업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의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회사의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1) '구조례'의 삭제부분 및 '신조례'의 추가변경 부분에 밑줄친 굵은 글씨체로 표시함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 등기기관이다. 하급의 회사등기기관은 상급의 회사등기기관의 지도하에 회사 등기업무를 한다. 회사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 등기기관이다. 하급의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의 회사등기기관의 지도하에 회사 등기업무를 한다. 회사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국내 회사등기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국내 회사등기 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등기 관할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아래에 열거된 회사 등기업무를 한다. 1) 국무원으로부터 수권받은 부문이 설립을 인가하는 주식회사 2) 국무원으로부터 투자권한을 부여받은 회사 3) 국무원으로부터 투자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부문이 단독출자 또는 공동출자에 따라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외국인투자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5) 법률 규정 또는 국무원의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아래에 열거된 회사 등기업무를 한다. 1) <u>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로서의 직책을 이행하는 회사</u> 및 이 회사가 출자해서 설립하고 또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2) 외국인투자회사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등기해야 하는 회사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동 국이 등기해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관리총국이 이 등기해야 하는 기타 회사	야 하는 기타 회사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그 관할지 역내 아래에 열거된 회사 등 기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그 관할구 역내 아래에 열거한 회사 등 기 업무를 담당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정부가 설립을 인가한 주식회 사	<u>1)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 민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 기관이 출자자로서 직책을 이행하는 회사 및 이 회사</u>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정부로부터 투자 권한을 부여 받은 회사	<u>가 출자해서 설립하고 동시 에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는 회사</u>	
3) 국무원으로부터 투자권한 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부문 이 기타 출자자와 공동출자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u>2)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 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 라 동 국이 등기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자연인이 출 자해서 설립한 회사</u>	
4)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정부로부터 투자권한을 부 여받은 기관 또는 부문이 단 독 또는 공동출자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u>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 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 행정관리국이 등기해야 하 는 회사</u>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 터 등기를 위탁받은 회사	<u>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으 로부터 등기 권한을 부여받 은 기타 회사</u>	
제8조 市,縣의 공상행정관리국 은 그 관할구 지역의 본 조례 제6조 및 7조에 열거되어 있	<u>제8조 區를 설치하는 市(지 역)의 공상행정관리국, 縣의 공상행정관리국 및 직할시</u>	

는 회사 이외의 회사 등기업무를 한다. 구체적인 등기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u>의 공상행정관리분국, 區를 설치하는 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의 區分국은 그 관할구역내의 이하에 열거된 회사를 등기한다.</u> <u>1) 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u> <u>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등기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u> <u>전항에 규정한 구체적인 등기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단, 그 중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區를 설치하는 市(地域)의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를 책임진다.</u>	
제 3장 등기사항		
제9조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명칭, 소재지, 법정대표자, 등록자본, 기업유형, 경영범위, 영업기간,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이름 또는 명칭이 포함된다.	제9조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아래가 포함된다. 1) 명칭 2) 소재지 3) 법정대표자 성명 4) 등록자본 5) 불입자본 6) 회사유형 7) 경영범위 8) 영업기간	회사법 개정 에 따라 5) ‘불입자본’을 추가함 회사법의 개정 에 따라 9) ‘출자예정 또는 불입출자액, 출자시기, 출자방식’을 추가

	9)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u>출자예정 또는 불입 출자액, 출자시기, 출자방식</u>	
제10조 회사의 등기사항은 법 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 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 사등기기관은 이를 등기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사의 등기사항은 법 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이를 등기하 지 않는다.	
제11조 회사의 명칭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 사는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등기기관의 심 사·등기를 거친 회사의 명칭 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회사의 명칭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는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 할 수 있다. 회사등기기관의 심사·등기를 거친 회사의 명 칭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2조 회사의 소재지는 회사 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등기하 는 회사의 소재지는 1개소에 한한다. 회사 소재지는 회사등 기기관의 관할구 지역이어야 한다.	제12조 회사의 소재지는 회사 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등기하 는 회사의 소재지는 1개소에 한한다. 회사의 소재지는 그 회사 등기기관의 관할구 지역 이어야 한다.	
제13조 회사의 등기자본은 인 민폐로 표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회사의 등록자본 및 <u>불입자본</u> 은 인민폐로 표시해 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 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회사법’의 개정 에 따라 ‘불입 자본’ 추가
	<u>제14조 주주의 출자방식은</u> <u>‘회사법’ 제27조의 규정에</u>	“신설”

	부합해야 한다. 주주가 현금, 현물, 지적소유권, 토지 사용권 이외의 재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등기규칙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국무원의 관계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한다. 주주는 노무, 신용, 자연인의 성명, 영업상의 신용, 프랜차이즈권한 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권을 가격평가로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회사정관에 규정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등기한다. 기업의 경영범위의 용어는 국민경제업종분류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신설”
	제16조 회사유형에는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포함돼 있다. 1인유한책임회사는 회사등기시 자연인 독자 또는 법인독자로 명기하고 동시에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명기해야 한다.	“신설” ‘신회사법’ 제58조와 관련됨
제 4장 설립 등기		
제14조 회사를 설립할 시 명	제17조 회사를 설립할 시 명	

칭의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회사설립에 따른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범위 중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허가를 받기 전에 회사명칭 사전 허가수속을 하고 동시에 회사등기기관이 허가한 회사의 명칭으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칭의 사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u>또는 국무원 결정</u>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에 따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u>국무원 결정</u>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속하는 것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회사명칭 사전 허가수속을 하고 동시에 회사등기기관이 허가한 회사의 명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명칭 사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전원이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하는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명칭의 사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명칭의 사전허가를 신청할 시 아래에 열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전원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전원이 서명한 회사명칭 사전허가 신청서	제18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주 전원이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하는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명칭 사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하는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명칭의 사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명칭의 사전허가를 신청할 시는 아래에 열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전원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전원이 서명한 회사명칭 사전허가	

2) 주주 또는 발기인의 법인 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 분증명서 3) 회사등기기관이 제출을 요 청하는 기타 문서 <u>회사등기기관은 전항에 열거 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해야 한다. 회사 등 기기관은 허가하는 것을 결 정한 경우, '기업명칭 사전허 가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u>	신청서 2) 주주 또는 발기인 전원이 지정하는 <u>대표 또는 공동으 로 위탁하는 대리인의 증명 서</u> 3) <u>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 는 기타 문서</u>	
제16조 사전허가받은 회사의 명칭 보류기간은 6개월이다. 사전허가받은 회사의 명칭은 보류기간내에 경영활동에 종 사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 며 양도해서도 안된다.	제19조 사전허가받은 회사의 명칭 보류기간은 6개월이다. 사전허가받은 회사의 명칭은 보류기간내에 경영활동에 종 사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 며, 양도해서도 안된다.	
제17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할 경우, 주주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설 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국유 독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국가 로부터 투자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수권받 은 부문이 신청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한 책임회사 설립시 심사허가를	제20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할 경우, 주주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설 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국 유독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u>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 의 권한을 부여받은 동 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 기관</u>이 신청자로서 설립등기 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심사허가기관에 보고해서 원 허가문서의 효력을 확인해 놓든가 또는 고쳐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때는 회사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이사장이 서명한 설립등기신청서 2) 주주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의 증명서 3) 회사 정관 4) 법정자격을 보유한 출자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자검사증명서 5) 주주의 법인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6) 회사의 이사, 감사역, 관리자 성명, 주소가 명기된 문서	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허가기관에 보고해서 원 허가문서의 효력을 확인해 놓든가 또는 고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때는 회사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u>법정대표자</u>가 서명한 설립등기신청서 2) 주주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의 증명서 3) 회사 정관 4) <u>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자검사증명서,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u> 5) <u>주주의 최초 출자가 비현금자산인 경우, 그 재산권의 이전수속 완료된 증명서를 회사설립 등기시에 제출</u>	5) 추가(회사등록자본등기관리규정 제12조 참
--	--	----------------------------------

및 임명파견, 선출 또는 임용에 관한 증명서 7) 회사의 법정대표자의 취임 문서 및 신분증명서 8) 기업명칭 사전허가 통지서 9) 회사소재지 증명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u>해야 한다.</u> 6) 주주의 주체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7) 회사의 이사, 감사역, 관리자 성명, 주소가 명기된 문서 및 임명 파견, 선출 또는 임용에 관한 증명서 8) 회사의 법정대표자의 취임 문서 및 신분증명서 9) 기업명칭사전허가통지서 10) 회사소재지 증명서 <u>1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서</u> <u>외국인투자에 의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최초 출자액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설립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전액을 불입해야 하며, 그 중 투자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 불입을 해도 된다.</u>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결정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허가를 받을	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신설 (종래의 특별규정 폐지)
--	--	--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허가 문서도 제출해야한다.	
제18조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사회는 창립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때는 회사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이사장이 서명한 설립등기 신청서 2) 국무원으로부터 수권받은 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허가문서. 모집 방식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국무원증권관리부문의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회사 정관 5) 회사 창립 준비의 재무감사보고	제21조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사회는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u>모집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 3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u> 주식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때는 회사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u>법정대표자</u>가 서명한 설립등기증명서 2) <u>이사회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의 증명서</u> 3) 회사 정관 4) <u>법에 따라 설립된 출자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자검사 증명서</u> 5) <u>발기인의 최초 출자가 비현금재산인 경우, 그 재산권이전 수속이 완료된 증명문</u>	5) 추가(회사등록자본등기관리규정제12조 참

	<u>서를 회사의 설립등기시에 제출해야 한다.</u> 6) 발기인의 주체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7) 회사의 이사, 감사역, 관리자 성명, 주소가 명기된 문서 및 임명 파견, 선출 또는 임명에 관한 증명서 8) 회사의 법정대표자의 취임 문서 및 신분증명서 9) 회사명칭 사전허가통지서 10) 회사소재지 증명서 <u>1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서</u>	조)
	<u>모집방식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여기에다 창립총회의 의사록도 제출해야 한다. 모집방식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공개발행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u>	구조례(3) 참조
	<u>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 허가를 받을</u>	구조례(2)참조

	<u>필요가 있을 경우, 여기에다 관련되는 허가문서를 제출 해야 한다.</u>	
제19조 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중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등기 신청 전에 국가의 관계부문에 신청해서 심사허가를 받고, 동시에 회사등기기관에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중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등기 신청 전에 국가의 관계부문에 신청해서 심사허가를 받고, 동시에 회사등기기관에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회사 정관중에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에 어떤식이든지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23조 회사정관중에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에 어떤식이든지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회사 소재지 증명서는 회사가 그 소재지에서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문서를 말한다.	제21조 회사 소재지 증명서는 회사가 그 소재지에서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문서를 말한다.	
제22조 회사등기기관이 <u>심사·설립등기</u> 를 하고 동시에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교부할 때 회사는 설립된다. 회사는 회사 등기기관이 교부한 인장을 작성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납세등기를 신청한다.	제25조 <u>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교부일을 회사의 설립일로 한다.</u>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교부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에 기초해서 인장을 작성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납세등기를 신청한다.	
제 5장 변경 등기		

제23조 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 원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6조 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 원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변경등기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등기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등기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24조 회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 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회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1)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변경 등기신청서	
2) ‘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변경 결의서 또는 결정	2) ‘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변경 결의서 또는 결정	
3) 회사등기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문서	3) <u>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문서</u>	
회사에 의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회사 정관 수정에 관한 경우,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이 회사정관의 수정에 관한 경우, <u>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u>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 정관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u>등기변경 사항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다 회사등기기</u>	

	관과 관련된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회사가 명칭 변경시 변경 결의문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회사가 명칭 변경시 변경 결의문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6조 회사가 소재지를 변경할 때 신 소재지에 이전하기 전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신소재지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회사가 소재지를 변경할 때 신 소재지에 이전하기 전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새로운 소재지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회사등기기관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신 소재지로 이전하기 전에 이전지의 회사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전지의 회사등기기관이 이를 수리한 경우, 원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와 관련 보존 기록을 이전지의 회사등기기관에 이송한다.	회사가 회사등기기관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신 소재지에 이전하기 전에 이전지의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전지의 회사등기기관이 이를 수리한 경우, 원래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와 관련 보존기록을 이전지의 회사등기기관에 이송한다	
제27조 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결의문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변경의 결의문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회사가 등록자본을 변경할 시는 법정자격을 갖춘 출자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자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회사가 등록자본을 변경할 시는 법에 따라 설립된 출자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자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자할 시는 출자금이 전액 불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국무원으로부터 수권받은 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방식으로 등록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의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u>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자할 시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에 의한 증자자본의 출자인수 및 주식회사의 주주에 의한 신주 인수는 각각 ‘회사법’의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관한 출자 불입 및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주식자금 불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식회사가 신주 공개방식 또는 상장회사가 신주 비공개방식으로 등록자본을 증자할 때는 여기에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u>	
회사가 등록자본을 감자할 때는 등록자본 감자 결의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동시에 회사가 회사등록자본감자 공고를 적어도 3회 신문에 게재하는 것에 관한 증명 및 회사의 채무변제 또는 채무보증상황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u>회사의 법정준비금을 등록자본으로 전환해서 증자할 때는 유보하는 당해 준비금이 전환증자전의 회사 등록자본의 25%를 하회하지 않는 것을 출자검사증명서에 명기해야 한다.</u>	
	회사가 등록자본을 감자할 때는 공고일부터 45일 이후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회사가 회사등록자본감자 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에 관한 증명 및 사회채무변제 또는 채무보증상황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자본의 감자에 대해 변경등기 신청기간을 단축
	<u>회사가 감자한 후의 등록자본은 법정 최저한도액을 밑</u>	‘신회사법’ 제178조에 대응

	<u>돌아서는 안된다.</u>	
	제32조 회사가 불입자본을 변경할 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출자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자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회사정관에 명기된 출자시기, 출자방식에 따라 출자를 해야 한다. 회사는 출자 또는 주식자금을 전액 불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회사가 경영범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결의문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경영범위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관한 경우, 국가의 관계부문이 허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3조 회사가 경영범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결의문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경영범위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관한 경우, 국가의 관계부문이 인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u>회사의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속하고, 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문서가 몰수 취소되거나 또는 허가증, 기타 허가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u>	

	<u>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또는 본 조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u>	
제30조 회사가 유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회사유형의 설립조건에 따라 규정된 기간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관련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회사가 유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회사유형의 설립조건에 따라 규정된 기간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관련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주를 변경할 때는 주주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새 주주의 법인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u>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지분양도일로부터 30일</u>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새 주주의 주체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그 적법한 승계인이 주주의 자격을 계승할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u>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는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회사등기사항의 변경이 지점의 등기사항의 변경에	“신설”

	관한 것일 경우, 회사가 등기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2조 회사정관의 수정이 등기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회사는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수정안을 원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회사정관의 수정이 등기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회사는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수정안을 원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회사 이사, 감사역, 관리자에 변동이 생길 때는 원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회사 이사, 감사역, 관리자에 변동이 생길 때는 원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합작, 분할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는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할에 의해 해산되는 회사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할에 의해 신설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설해야 한다.	제34조 합작, 분할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는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할에 의해 해산되는 회사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할에 의해 신설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설해야 한다.	회사법의 개정 에 따라 개정
회사가 합병, 분할할 때는 합병, 분할의 결의 또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고 합병 합의서 및 합병, 분할의 결의 또는 결정과 함께 회사가 회사의 합병, 분할공고를 <u>적어도 3회</u> 신문에 게재했다는 증명 및 채무변제 또는 채무보증상황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합병, 분할할 때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고 합병합의서 및 합병, 분할의 결의 또는 결정과 함께 회사가 회사의 합병, 분할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증명 및 채무변제 또는 채무보증상황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u>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합병, 분할에</u>	

주식회사가 합병, 분할할 경우, 여기에다 국무원으로부터 수권받은 부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허가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u>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여기에다 관련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u>	
제35조 등기사항의 변경이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체해서 교부해야 한다.	제40조 등기사항의 변경이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체해서 교부해야 한다.	
	제41조 <u>회사는 ‘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의 취소를 신청할 때, 아래에 열거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u> 1) <u>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u> 2) <u>인민법원의 재판문서</u>	
제6장 말소 등기		
	제42조 <u>회사가 철수하고 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을 경우, 청산위원회는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 구성원, 청산위원회 책임자의 명부를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u>	“신설”
제36조 아래 상황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청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회사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3조 아래 상황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청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회사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2) 회사정관에 규정하는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하는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3) 주주회가 해산의 결의를 할 경우 4) 회사가 합병, 분할에 따라 해산할 경우 5) 회사가 법에 따라 폐쇄를 명할 경우	1) 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관에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u>단, 회사가 회사정관을 수정해서 존속할 경우는 제외됨</u> 3) 주주회, <u>주주총회가 해산 결의를 할 경우 또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외국인 투자에 의한 회사의 동사회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u> 4) <u>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몰수되고 폐쇄 또는 폐지를 명령받을 경우</u> 5) <u>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산을 권고했을 경우</u> 6) <u>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하는 기타 해산 상황</u>	
제37조 회사가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래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위원회의 책임자가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법원의 파산재정, 회사가	제44조 회사가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래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위원회의 책임자가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u>인민법원</u>의 파산재정, <u>해</u>	

‘회사법’에 따라 행한 결의 또는 결정, 행정기관의 폐쇄를 명령받은 문서 3) 주주회 또는 관계기관이 확인한 청산보고서 4) ‘기업법인영업허가증’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문서	<u>산에 관한 재판문서</u>, 회사가 ‘회사법’에 따라 행한 결의 또는 결정, 행정기관이 폐쇄를 명령 <u>또는 회사가 폐지한 문서</u> 3) 주주회, <u>주주총회</u>, <u>1인유한책임회사의 주주</u>, <u>외국인투자회사의 이사회</u> 또는 <u>인민법원</u>, <u>회사허가기관이 제출 허가·확인한 청산보고서</u> 4) ‘기업법인영업허가증’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문서 <u>국유독자회사가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여기에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결정도 제출해야 한다. 그 중 국무원이 확인한 중요한 국유자산회사는 여기에다 동 급인민정부의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u> <u>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여기에다 지점의 말소등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u>	
제38조 회사등기기관이 <u>심사</u>·말소등기를 할 경우 회사	제45조 회사등기기관이 말소등기를 할 경우 회사는 종료	

는 종료된다.	된다.	
제 7장 지점 등기		
제39조 지점이란 회사가 그 소재지 외에 설립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점은 기업법인격이 없다.	제46조 지점이란 회사가 그 소재지 이외에 설립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점은 기업법인격이 없다	
제40조 회사가 지점을 설립할 시는 지점소재지의 시, 현의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등기된 경우, ‘영업허가증’이 교부된다.	“삭제”	
제41조 지점의 등기사항에는 명칭,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가 포함된다. 지점의 명칭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지점의 경영범위는 회사의 경영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47조 지점의 등기사항에는 명칭,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가 포함된다. 지점의 명칭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지점의 경영범위는 회사의 경영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42조 회사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설립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지점을 설립할 시, 회사등기기관에 아래에 열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회사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설립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u>지점 소재지</u> 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u>또는 국무원 결정</u> 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지점을 설립할 시, 회사등기	

1)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지점설립의 등기신청서	기관에 아래에 열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회사 정관 및 회사등기기관이 날인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사본	1)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지점 설립의 등기신청서
3) 영업장소의 사용증명서	2) 회사 정관 및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사본
4) 회사등기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문서	3) 영업장소의 사용증명서
	4) <u>지점대표자의 취임문서 및 신분증명서</u>
	5) <u>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서</u>
	<u>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지점설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점이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속하는 경우, 여기에 관련되는 허가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u>
	<u>지점의 회사 등기기관은 등기를 허가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회사는 지점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u>

	<u>내에 지점의 '영업허가증'에 기초해 회사 등기기관에 제 출해야 한다.</u>	
제43조 지점은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는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49조 지점은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는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변경을 신청할 때는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명칭 변경에 따라 지점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회사의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범위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관한 경우, 관계부문의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장소를 변경할 경우, 새 영업장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칭, <u>경영범위</u> 를 변경할 경우, <u>회사의 인장을 날인한</u>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u>지점의</u>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u>또는 국무원 결정의</u> 규정에 따라 등기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속하는 경우, 여기에 <u>관련되는</u> 허가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 영업장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회사의 임면문서 및 그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u> 회사등기기관은 변경등기를 <u>허가할</u> 경우, '영업허가증'을 교체해서 교부한다.	
제44조 회사가 지점을 폐지할 때는 폐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점의 회사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제50조 <u>지점이 회사에 의해 영업중지가 되고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받아 영업허가 증을 몰수될 경우, 회사는</u>	

한다.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말소 등기신청서 및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의 <u>심사</u>·말소등기를 한 후,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u>결정을 내린 날로부터</u> 30일 내에 당해지점의 회사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기신청서 및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은 심사·말소등기를 한 후,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은 말소등기를 <u>허가한 후</u>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 8장 등기 수속		
제45조 회사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본 조례의 규정에 합치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회사등기수리통지서’를 교부한다.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통지서’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기여부를결정한다. 회사등기기관은 심사를 거쳐 등기할 경우, 등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교부하든가, 교체해서 교부하든가 또는 회수해야 한다.	“삭제”	
	제51조 <u>회사, 지점의 등기를</u>	

	<u>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등기 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텔렉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u> <u>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의 연락방법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u>	“신설”
	<u>제52조 회사등기기관은 아래의 상황에 기초 각각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u> <u>1) 신청문서, 자료에 미비점이 없고, 법정 형식에 맞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보완신청서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u> <u>2) 신청문서, 자료에 미비점이 없고 법정 형식에 맞지만,</u> <u>신청서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등기기관이 인정할 경우, 수리 결정을 하고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유 및 기한을 사전에 빨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신설”

	3) 신청 당시 수정가능한 오류가 신청문서, 자료에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하는 것을 신청인에게 허가해야 하며, 신청인은 수정 내역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정일을 명기한다. 확인 결과, 신청문서, 자료에 미비점이 없고 법정 형식에 합치한 경우, 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신청문서, 자료에 미비점이 있거나 또는 법정 형식에 맞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모든 내용을 신청 당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일괄 통지해야 한다. 신청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지할 경우, 신청문서,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려해야 한다. 5일 이내에 통지할 경우, 신청문서, 자료를 수취하고 동시에 신청문서, 자료의 수취증빙을 발행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서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문서, 자료 접수일을 수리일로 간주한다. 5) 회사 등기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동 기관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신속히 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	---	--

	<u>관계행정기관에 신청을 할려고 하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u>회사 등기기관은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한 문서 및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u>	
	<u>제53조 본 조 제5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허가의 결정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등기기관은 수리결정을 할 때는 ‘수리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불수리의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행정불복심사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신설”
	<u>제54조 회사 등기기관은 수리 결정을 한 신청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규정 기간 내에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u> 1) 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낸 신청을 수리할 경우, 그 자리에서 등기허가 결정을	“신설”

	<u>내려야 한다.</u> 2) <u>신청인이 서간형식으로 낸 신청을 수리할 때는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u> 3) <u>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은 '수리신청서'를 수취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의 교환 및 전자메일 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동시에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문서, 자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에 신청문서, 자료원본을 제출할 경우, 그 자리에서 등기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서간 방식으로 신청문서, 자료의 원본을 제공한 경우,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u> 4) <u>회사등기기관이 '수리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문서, 자료원본을 수취 않는다든가, 또는 신청문서, 자료원본과 회사등기기관이 수리한 신청문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u>	
--	--	--

	경우, 등기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은 신청문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5조 회사등기기관이 회사명칭의 사전허가 결정을 내릴 때는 '기업명칭사전허가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 설립등기 허가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려고 하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의 변경등기 허가 결정을 할 때는 '변경등기허가통지서'를 발행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의 교체 교부수속을 하려고 하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의 말소등기 허가 결정시는 '말소등기허가통지서'를 발행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명칭에 대해 사전 허가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경우, '기업명칭거부통지서', '등기거부통지서'를 발행하는 한편, 허가, 등	

	<u>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행정불복심사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제46조 회사가 설립등기, 변경등기를 할때는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수령할 경우, 설립등기료는 등록자본총액의 1%분을 납부한다. 등록자본이 1,000만위안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0.5%분을 납부한다. 등록자본이 1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한다.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경우, 설립등기료는 300위안이다.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기료는 100위안이다.	제56조 회사가 설립등기, 변경등기할 때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받을 경우, 설립등기료는 등록자본총액의 <u>0.8%분</u>을 납부한다. 등록자본이 1,00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u>0.4%분</u>을 납부한다. 등록자본이 1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경우, 설립등기료는 300위안이다.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기료는 100위안이다.	설립등기료 인하됨
제47조 회사등기기관은 심사를 거쳐 등기한 회사의 등기사항을 회사 등기부에 기재하여 일반인들이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u>회사의 등기사항을 조사·열람, 복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사, 열람, 복사료를 납부해야 한다.</u>	제57조 회사등기기관은 등기한 회사의 등기사항을 회사 등기부에 기재하여 일반인들이 조사·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 <u>주식회사는 설립, 변경, 말소등기를 심사·허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설립, 변경, 말소등기 공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고내용을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진행하는 설립, 변경, 말소등기의 공고내용은 회사등기기관이 심사를 거쳐 등기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u>	제58조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및 ‘영업허가증’의 몰수 공고는 등기기관이 한다.	
제9장 연도 검사		
제49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에 대해 연도검사를 실시한다.	제59조 <u>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에 대해 연도검사를 실시한다.</u>	연도검사기간 변경
제50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의 기간 내에 연사검사를 받고 동시에 연도검사보고서, 연도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의 기간 내에 연도검사를 받고 동시에 연도검사보고서, 연도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지점을 설립한 회사는 제출하는 연도검사자료에 대해 지점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시에 지점의 ‘영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점을 설립한 회사는 제출하는 연도검사자료에 대해 지점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시에 ‘영업허가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51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연도검사자료에 기초해 회사의 등기사항에 관한 상황을 <u>심사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자격을 확인해야 한다.</u>	제61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연도검사자료에 기초해 회사의 등기사항에 관한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제52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에 연도검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도검사료는 50위안이다.	제62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에 연도검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도검사료는 50위안이다.	
제10장 증명서 및 보존기록의 관리		
제53조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분으로 분류되며, 정본과 부분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정본 또는 ‘영업허가증’의 정본은 회사의 소재지 및 지점 영업장소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회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약간의 영업허가증 부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분으로 분류되며, 정본과 부분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정본 또는 ‘영업허가증’의 정본은 회사의 소재지 또는 지점 영업장소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두어야 한다. 회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약간의 영업허가증 부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 어떤 조직 및 개인도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조, 임대, 대출, 양도해서는 안된다. 영업허가증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지정하는 신문, 잡지사에 무효를 표명하고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64조 어떤 조직 및 개인도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조, 임대, 대출, 양도해서는 안된다. 영업허가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지정한 신문, 잡지에 무효를 표명하고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가 관계조직에 제출하는 영업허가증의 부분에 회사등기기관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사본에 날인할 수 있다.	회사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회사가 영업허가증 반환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 무효를 공고한다.	
제55조 회사등기기관은 인정필요가 있는 영업허가증을 일시에 보관할 수 있다. 단, 보관기간은 1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65조 회사등기기관은 인정필요가 있는 영업허가증을 일시에 보관할 수 있다. 단, 보관기간은 1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56조 회사등기의 보존기록자료를 열람, 필사, 휴대, 복제할 경우, 규정의 권한 및 수속에 따라야 한다. 어떤 조직 및 개인도 회사등기 보존기록자료에 대한 수정, 말소, 기입을 하거나 또는 파손해서도 안된다.	제66조 회사등기의 보존기록자료를 열람, 필사, 휴대, 복제할 경우, 규정의 권한 및 수속에 따라야 한다 어떤 조직 및 개인도 회사등기 보존기록자료에 대한 수정, 말소, 기입을 하거나 또는 파손해서도 안된다.	
제57조 영업허가증 정본, 부분양식 및 회사등기에 관한 중요문서의 서식 또는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67조 영업허가증 정본, 부분양식 및 회사등기에 관한 중요문서의 서식 또는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1장 법적 책임		
제58조 <u>회사등기시</u> 등록자본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해서 회사 등기를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등	제68조 등록자본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해서 회사 등기를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등록자본의 허	

록자본 허위보고액의 5%이상 1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추궁된다.	위보고액의 5%이상 1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제59조 <u>회사등기를 할 때</u> 허위 증명서를 제출 또는 기타 허위 수단을 이용해서 회사등기를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등기를 말소하고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추궁된다.	제69조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기타 허위 수단을 이용,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서 회사등기를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u>5만원</u> 이상 <u>5만원</u>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등기가 말소되거나 또는 영업허가증이 몰수된다.	과태료 인상
제60조 회사 발기인, 주주가 통화, 현물로 불입할 수 없거나 재산권을 이전시키지 못해 허위의 출자를 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허위출자액의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u>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궁된다.</u>	제70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허위 출자를 하고, <u>출자 현금 및 비현금재산 불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u>,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허위출자액의 5% 이상 1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상한선 상승
제61조 법인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설립 후에 출자금을 인상할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인상된 출자액의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	제71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설립 후에 출자금을 인상할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인상된 출자액의 5% 이상 <u>15%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선 상승

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회사설립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6개월이 지나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영업개시 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제72조 회사설립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6개월이 지나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영업개시 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제63조 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관련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변경등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하지 않을 경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3조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u>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u> 관련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기한을 정해 등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이 중 경영범위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정황이 심각할 때는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u> <u>회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기한을 정해서 제출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만위안 이하의</u>	

	<u>과태료에 처한다.</u>	
제64조 회사가 합병, 분할, 등 록자본을 감자 또는 청산시 , 규정대로 채권자에게 통지 또 는 공고하지 않을 때에는 회 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4조 회사가 합병, 분할, 등 록자본을 감자 또는 청산시 규정대로 채권자에게 통지 또 는 공고하지 않을 때에는 회 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 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u>회사가 청산을 할 때 재산 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 는 재산목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채무변제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 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변제전에 분배한 회사 재산의 5% 이상 10%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또는 기타 직접채임자에 대해서 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 <u>회사가 청산기간에 청산과 상관없이 경영활동을 한 경 우, 회사등기기관은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u>	
제65조 청산위원회가 규정대 료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 는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요	제75조 청산위원회가 규정대 로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는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대	

한 사실이 은닉되거나 혹은 중대한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한 사실이 은닉되거나 혹은 중대한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u>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고 정실에 얽매어 부정행위를 하여 위법수입을 취하거나 또는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재산의 위반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또한 위법소득의 동액 이상 5배 이상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u>	
제66조 회사가 파산, 해산 등 청산을 종료한 경우,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삭제”	
제67조 주식회사가 설립, 변경, 말소등기를 한 후, 규정기간내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공고 내용과 회사등기기관이 심사를 거쳐 등기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한 경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삭제”	
제68조 회사가 규정대로 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	제76조 회사가 규정대로 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	

등기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연도검사를 받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서도 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연도검사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또한 기한을 정해서 시정하도록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등기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연도검사를 받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서도 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연도검사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또한 기한을 정해서 시정하도록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제69조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조, 임대, 대출, 양도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u>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u>	제77조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조,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제70조 영업허가증을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쉽게 보이는 곳에 두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8조 영업허가증을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쉽게 보이는 곳에 두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9조 <u>자산평가, 출자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기관이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u>	

	회사등기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동액 이상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관계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하며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서를 몰수하고 영업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자산평가, 출자검사 또는 감정을 받은 기관이 과실로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를 제공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정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획득한 수입의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관계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당해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하며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서를 몰수하고 영업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제71조 회사가 심사후 등기된 경영범위를 넘어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또한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삭제”	
제72조 법에 따라 책임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등기를	제80조 법에 따라 책임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등기를	

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든가 또는 이를 단속한다. 또한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u>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에 처한다.</u>	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또는 <u>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지점 명의를 사칭한 경우,</u>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이를 단속한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73조 회사등기기관이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회사등기신청을 등기한 경우, 정황이 심각할 때는 직접책임을 지고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상급의 회사등기기관이 하급의 회사등기기관에 강제해서 법정의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회사등기신청을 등기시키거나 또는 위법등기를 비호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회사등기기관이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회사 등기신청을 한 경우 <u>또는 규정의 조건에 합치하는 등기신청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u>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2조 회사등기기관의 상급 부문이 회사등기기관에 강제 해서 규정의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을 하고 <u>또는</u> <u>규정의 조건에 맞지 않는</u> <u>등기신청을 하지 않거나</u> 또 는 위법등기를 비호하는 경 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3조 <u>외국의 회사가 ‘회사</u> <u>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단</u> <u>으로 중국 국내에서 지점을</u> <u>설립한 경우, 회사등기기관</u> <u>은 시정 또는 폐쇄를 명한</u> <u>다. 또한 아울러 5만위안 이</u> <u>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u> <u>에 처할 수 있다.</u>	“신설”
	제84조 <u>회사의 명의를 이용</u> <u>해서 국가의 안전, 사회공공</u> <u>의 이익에 위해를 미치는</u> <u>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u> <u>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u>	“신설”
	제85조 <u>지점이 본 장에 규정</u> <u>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본</u> <u>장의 규정을 적용한다.</u>	“신설”
	제86조 <u>본 조례의 규정을 위</u> <u>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u> <u>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u> <u>추궁한다.</u>	"신설" ☞ 형사책임에 관한 포괄 규정 을 둠
제12장 부칙		
제74조 외국의 회사가 중국에 설립하는 지점 등의 등기는	“삭제”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5조 외국인투자에 의한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등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87조 외국인투자에 의한 회사 등기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에 등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88조 <u>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항목에 속할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기 전 행정허가 목록을 작성하고 공포한다.</u>	“신설”
제76조 본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89조 본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